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75
----------	-------

발의연월일 : 2026. 3. 26.

발 의 자 : 김예지·김대식·고동진
박덕흠·송석준·이소희
최수진·임종득·김소희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특수교육담당 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음.

그러나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육교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교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특수학교 등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특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및 제2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제56조에 따른 특수학급 및 제59조에 따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와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학</u> <u>교, 제56조에 따른 특수학급 및</u> <u>제59조에 따른 통합교육을 실</u> <u>시하는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u> <u>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은</u> <u>「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u> <u>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신 설></u>	<u>제28조의3(장애학생에 대한 특수</u> <u>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u> <u>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u> <u>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u> <u>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교육을</u> <u>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와 그 특</u> <u>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상담</u> <u>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 등</u> <u>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u> <u>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u> <u>하여야 한다.</u>